

군산시 공고 제2017-921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현행 「군산시 주차장조례」는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연육교가 연결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차량이용 수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건축허가(신고)신청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단서 중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를 “다만, 연육교가 연결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로 한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축경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우편번호 573-703)

- 전 화 : 063-454-4312(FAX 063-454-4299)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시정게시판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7 - 921호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단서 중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다만, 연육교가 연결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p> <p>①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p> <p>②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u>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다만,</u> <u>연육교가 연결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17-981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산면, 흥남동, 수송동, 나운3동 지역에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안 별첨]

- 가. 옥산면 : 아파트 명칭변경(현대엠코타운 ⇒ 힐스테이트 은파)
- 나. 흥남동 : 1개통 5개반 증 ⇒ 아파트신축
- 다. 수송동 : 행정구역 변경 및 관할지번 조정(통·반 증감無)
- 라. 나운3동 : 관할지번 조정 및 관할구역 정정(통·반 증감無)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총무과 (☎ 063-454-2246, FAX 454-2227)

- 전자우편 : garnetos@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계(☎ 063-454-22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아·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옥산면 외당1, 외당2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당북리	원당	1	원당
		2	내당
		3	정자나무골
		4	외당
당북리	외당1	1	힐스테이트 은파 101동 1~2호
		2	힐스테이트 은파 101동 3~4호
		3	힐스테이트 은파 102동 1~3호
		4	힐스테이트 은파 102동 4~6호
	외당2	1	힐스테이트 은파 103동 1~2호
		2	힐스테이트 은파 103동 3~5호
		3	힐스테이트 은파 104동 1~2호
		4	힐스테이트 은파 104동 3~4호
면 계	24	47	

별표] 중 대명동 24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대명동	3	1	385의 1, 5, 8~17, 19~24, 50, 387의 1~9, 11~14, 17~18	
		2	386의 1~8, 10~15, 22~32, 36~44	
		3	388의 1~7, 10~11, 13~19	
		4	384의 24~41, 44~46, 48, 55~58, 60, 62~65	
		5	대명동 384의 1~3, 5~12, 42, 47, 49~50, 대명동 384의 14~16, 18~22, 43, 52, 54	
대명동	22	1	385의 60 현대메트로타워 101동 2층 ~ 16층, 상가	
		2	385의 60 현대메트로타워 101동 17층 ~ 31층	
		3	385의 60 현대메트로타워 104동 2층 ~ 16층	
		4	385의 60 현대메트로타워 104동 17층 ~ 31층	
	23	1	385의 60 현대메트로타워 102동 2층 ~ 17층	
		2	385의 60 현대메트로타워 102동 18층 ~ 33층	
		3	385의 60 현대메트로타워 103동 2층 ~ 17층	
		4	385의 60 현대메트로타워 103동 18층 ~ 33층	
	24	1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1동 전체	
		2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2동 전체	
		3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3동 전체	
		4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4동 전체	
		5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5동 전체	
	동계	24	119	

별표] 중 수송동 6/3, 7/4, 미장동 17/4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6	1	745의 12, 745의 17~27, 747의 17.19, 479의 51~53, 479의 64, 479의 56.57.60.61, 479의 63~70, 479의 117.120.129, 479의 131, 744의 1.13.32, 745의 29, 747, 747의 20
		2	479의 40.41.45.48, 479의 73~76, 479의 104~107, 479의 110~111, 479의 113, 485번지 일대, 744의 9, 479의 10.12.27, 479의 32~35, 479의 78~ 84, 479의 38, 479의 86~89, 479의 91~93, 479의 95~102
		3	784, 786~787, 789~795, 798(OCI)기숙사, 750의 3~9, 798의 1~2, 961~1014, 산 33~34
	7	1	431의 6,10, 433의 5~19, 439의 8~51, 441의 1~6, 427의 2~11, 427의13~15, 427의17
		2	434의 7~15, 438의 6~8, 439의 17~35, 758의 14~18
		3	437의 6~15, 441의 14~16, 758의 24~27, 442의 5~26
		4	430의 4~29, 434의 19, 435의 5~27, 442의 5(지산연립), 442의 23~25, 443, 444의7.38, 755의1.4.11.17.18, 756의 1~16,756-3(문화연립),757의1~8, 758의 37~51, 783의 4, 444의 1~6,8~37. 39~41, 755의 1, 759의2, 913~960
미장동	17	1	380의 9~22, 381의 67~120
		2	381의 1~13, 54~58, 69, 381의 27, 35, 382의 1~30, 383, 384의 1~5
		3	399의 1~10, 400, 401, 402의 1~4, 404~406, 410, 413~418, 52의 32, 270, 389, 394의 1~4, 395의 3~47
		4	484~558
동계	72	290	

별표] 중 나운동 30/4, 신관동 53/1, 개사동 54/2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3동)	30	1	1250~1297, 1321~1399, 1255의 11 그린은파파크맨션 201호~1002호
		2	854의 1 군산월드아파트, 847~854, 1126의 16~17, 1128의 3, 1198~1302, 1304~1307, 1309~1310, 1312, 1315~1316, 산107의 10, 산107의 15, 산170의 1, 산170의 3~4, 산172~산172의 2, 산173의 1~3, 산174의 1~2
		3	855~865
		4	867 ~ 871, 1128~1186(1155의9~21제외), 1234
		5	1242의 9 신광모자원A,B,C동, 1235~1249(1248제외), 산107 (산107의 10, 산107의 15제외)
신관동	52	1	376~474의4
		2	474의6~568
		3	570~659의1
	53	1	42 ~ 172, 950 ~ 969, 7 ~ 40의1, 939의2
		2	42의118, 166, 176~281의3
	개사동	54	1
2			118의3 ~ 269의1, 1221 ~ 1228
3			283의1~472
동 계	57	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별표]

이·동·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행				개정안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여로~ 신당		장수고개~ 신당	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여로~ 신당		현행과 같음		
당북리	원당1	1	현행과 같음	당북리	원당1	1	현행과 같음		
	원당2	2	현행과 같음		원당2	2	현행과 같음		
	원당3	3	현행과 같음		원당3	3	현행과 같음		
	원당4	4	현행과 같음		원당4	4	현행과 같음		
	외당1	1	현대엠코타운2차 201동 1~2호		외당1	1	힐스테이트 은파 101동 1~2호		
		2	현대엠코타운2차 201동 3~4호			2	힐스테이트 은파 101동 3~4호		
		3	현대엠코타운2차 202동 1~3호			3	힐스테이트 은파 102동 1~3호		
		4	현대엠코타운2차 202동 4~6호			4	힐스테이트 은파 102동 4~6호		
	외당2	1	현대엠코타운2차 203동 1~2호		외당2	1	힐스테이트 은파 103동 1~2호		
		2	현대엠코타운2차 203동 3~5호			2	힐스테이트 은파 103동 3~5호		
		3	현대엠코타운2차 204동 1~2호			3	힐스테이트 은파 104동 1~2호		
		4	현대엠코타운2차 204동 3~4호			4	힐스테이트 은파 104동 3~4호		
	당북리 금성리	백석~ 외류			백석~ 외류	당북리 금성리	백석~ 외류		현행과 같음
	면계	24통	47반			면계	24통	47반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중앙로3가	1	4					현행과 같음
대명동	2~3	10					현행과 같음
장재동 미원동 동흥남동 서흥남동	4~21	92					현행과 같음
대명동	22~23	8					현행과 같음
대명동			<신설>	대명동	24	1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1동 전체
			<신설>			2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2동 전체
			<신설>			3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3동 전체
			<신설>			4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4동 전체
			<신설>			5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5동 전체
동계	23	114반		동계	24통	119반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1~5			수송동	1~5		현행과 같음
수송동	6	1	745의 12, 745의 17~27, 747의 17.19, 479의 51~53, 479의 64, 479의 56.57.60.61, 479의 63~70, 479의 117, 120, 129, 479의 131, 744의 1.13.32, 745의 29, 747, 747의 20	수송동	6	1	현행과 같음
		2	479의 40.41.45.48, 479의 73~76, 479의 104~107, 479의 110~111, 479의 113, 485번지 앞대, 744의 9, 479의 10, 12.27, 479의 32~35, 479의 78~ 84, 479의 38, 479의 86~89, 479의 91~93, 479의 95~102			2	현행과 같음
		3	784, 786~787, 789~795, 798(OCI)기숙사, 750의 3~9, 798의 1~2,			3	784, 786~787, 789~795, 798(OCI)기숙사, 750의 3~9, 798의 1~2, 961~1014, 산 33~34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7	1	431의 6,10, 433의 5~19, 439의 8~51, 441의 1~6, 427의 2~11, 427의 13~15, 427의17	수송동	7	1	현행과 같음
		2	434의 7~15, 438의 6~8, 439의 17~35, 758의 14~18			2	현행과 같음
		3	437의 6~15, 441의 14~16, 758의 24~27, 442의 5~26			3	현행과 같음
		4	430의 4~29, 434의 19, 435의 5~27, 442의 5(지산연립), 442의 23~25, 443, 444의 7.38, 755의1.411.17.18, 756의1~16, 756-3(문화연립),757의1~8, 758의 37~51, 783의 4, 444의 1-6, 8-37. 39~41, 755의 1, 759의2			4	430의 4~29, 434의 19, 435의 5~27, 442의 5(지산연립), 442의 23~25, 443, 444의 7.38, 755의1.411.17.18, 756의1~16, 756-3(문화연립),757의1~8,758의 37~51, 783의 4, 444의 1-6, 8-37. 39~41, 755의 1, 759의2, 913~960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미장동	17	1	380의 9~22, 381의 67~120	미장동	17	1	현행과 같음
		2	381의 1~13, 54~58, 69, 381의 27, 35, 382의 1~30, 383, 384의 1~5			2	현행과 같음
		3	399의 1~10, 400, 401, 402의 1~4, 404~406, 410, 413~418, 52의 32, 270, 389, 394의 1~4, 395의 3~47			3	현행과 같음
		4	17의 11, 18의 15, 433, 445, 450, 457, 549, 563, 579, 582, 585, 617, 51의 56, 52의 24~30, 51의 2~999, 49, 61의 20, 62의 43, 493, 494, 532, 289의 19 ~ 329의 1, 산62의 1~87의 2, 29의 1			4	484-558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18~72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18~7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나운동	1~29			나운동	1~29		현행과 같음
나운동	30	1~3		나운동	30	1~3	현행과 같음
		4	867~871, 1120~1186 (1126의16~17, 1128의3 제외), 1190, 1234			4	867~871, 1128~1186(1155의9~21 제외), 1234
미룡동	31~51			미룡동	31~51		현행과 같음
신관동	52			신관동	52		현행과 같음
		1	42의6~172			1	7~40의1, 42~172, 950~969, 939의2
	53	2			53	2	현행과 같음
개사동	54	1		개사동	54	1	현행과 같음
		2	118의3~269의1			2	118의3~ 269의1, 1221~1228
		3				3	현행과 같음
미룡동	55~57			미룡동	55~57		현행과 같음
동계	57	219		동계	57	219	

군산시 공고 제2017-1002호

공 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 (안 제2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인근지역
 -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
 - 기타 시장이 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협의회 기능(협의) (안 제2조제2항)
 - 화학사고 발생 지역의 오염피해 조치·복구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시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고지
 -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 고지
- 협의회 구성 (안 제3조)
 - 부시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환경 및 안전과장, 유관기관, 지역주민, 의원, 기업환경협의회
- 회의 운영 (안 제4조)
 -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 임시회의는 화학사고 발생시 소집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21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063-454-3402, FAX:452-8165)
 - 전자우편 : hyemi37550@korea.kr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063-454-34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군산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인근 지역
2.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기타 시장이 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 고지
2. 화학사고 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고지
3. 화학사고 발생지역의 오염피해 조치·복구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회원

- 가. 시 화학물질관리 업무부서 과장
- 나. 시 재난안전관리부서 과장
- 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해당과장

2. 위촉직 회원

- 가. 제2조제1항의 인근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주민 대표
- 나.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대표 또는 군산기업환경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라. 화학물질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5조(회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회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회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협의회장이 판단되는 경우

제6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산시 화학물질관리 담당부서의 계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회원, 그 밖에 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17-2호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법조항 수정 및 관련 규칙을 제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수정(안 제1조, 제2조)
- 나. 기업출납원을 담당과장으로 지정(안 제2조)
- 다. 현재 결산 보고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현재)대차대조표 ⇒ (변경)재무상태표(안 제5조)
- 라.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관련 법령 삭제(안 제38조)
- 마. 재고조사에 관련된 실사의 입회 조항과 연결(안 제9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0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laurenzio@korea.go.kr
-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3) 팩스 : 063-452-8177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과(전화 : 063-454-53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시행령” 을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소장” 을 “담당과장” 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된다” 를 “안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 를 각각 “재무상태표” 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제13조” 를 “제12조” 로 한다.

제25조 중 “및 제2항” 을 “제2호” 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영 제17조제1항” 을 “영 제23조” 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봉급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제28조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부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을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30조 중 “영 제18조” 를 “영 제25조” 로 한다.

제32조 중 “영 17조제2항” 을 “영 17조제1항” 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 현재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제35조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 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4조 및 제25조의2” 를 “영 제25조 및 제26조의” 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2조 본문 중 “여입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을 “과오납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

제72조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6호의2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 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호” 로 한다.

제8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94조 중 “제132조” 를 “제93조” 로 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 을 “제20조제1항” 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13조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3조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제1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제11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7-7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대명동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광신종합건설(주) 외 1
 - 나. 대표자 : 김인진
 - 다.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91(오선동)
3. 시 공 자
 - 가. 명 칭 : 새천년종합건설(주)
 - 나. 대표자 : 정인채
 - 다.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학생운동길 39(남외동)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385-19번지
 - 나. 주택구분 : 민간임대
 - 다. 대지면적 : 12,948.3000㎡
 - 라. 건축면적 : 2,876.4986㎡
 - 마. 연 면 적 : 65,863.2612㎡
 - 바. 건축규모 : 아파트 6동 25~29층, 480세대

59형	59.9470㎡	110세대
69형	69.6892㎡	170세대
84 A형	84.9730㎡	77세대
84 B형	84.9330㎡	24세대

84 C형	84.8521m ²	53세대
84 D형	84.6918m ²	46세대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 사 업 비 : 110,893,557천원

자. 사업기간 : 2013. 03. 01 ~ 2020. 01. 02

5. 주요변경사항

- 대지면적 변경, 조경면적 변경, 어린이놀이터 변경, 전체동 위치이동,
- 단위세대 면적변경 및 구조변경, 근린생활시설 전기실 위치변경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7년 5월 22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7 - 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지엔종합건설외 1
 - 나. 대표자 : 정규성
 - 다.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길, 13, 3층
3. 시 공 자
 - 가. 명 칭 : (주)문장건설
 - 나. 대표자 : 장치성
 - 다.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3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9-2외 1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임대)
 - 다. 대지면적 : 18,934.0000㎡
 - 라. 건축면적 : 15,022.2221㎡
 - 마. 연 면 적 : 119,452.7941㎡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38~40층 /아파트 7개동 외
 -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869				
59A	민영주택	256	59.9120	29.0280	88.9400	
59B	민영주택	140	59.6793	28.9733	88.6526	
59C	민영주택	140	59.9023	28.3850	88.2873	
59D	민영주택	222	59.8800	29.0257	88.9057	
59E	민영주택	111	59.9399	28.7579	88.6978	

아.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업비 : 130,350,000천원

차. 사업기간 : 2017. 2. 1 ~ 2020. 6.1.

5. 주요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근린생활시설면적 변경	3,355.3793m ²	3,203.5427m ²	감 151.8366m ²

6.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7. 5.15.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7-72호

해망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망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명 칭 : 해망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군산시 해망동 산5-43번지 일원
- 나. 사업규모
 - 사면정비(절토) $V= 6,715\text{m}^3$
 - 지장가옥철거 3동
 - 낙석방지책 $L=102\text{m}$

4.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예정일 : 2017년 6월
-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까지	'17년 계획	'18년 이후	비고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부대시설		· 실시설계 · 사면정비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부대시설	
총 사업비	1,500	0	100	1,400	
· 국 비	750	0	50	700	
· 지방비	750	0	50	700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별첨

7.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포함)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8.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9. 사업효과 분석

- 절개사면 활동력 증가 및 지지력 부족으로 '16년 5월 붕괴가 되었으며, 집중호우 등으로 사면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행자 및 통행차량에 피해가 예상되어 위험요소 제거 및 사면안정을 확보하는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10.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끝.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해망3지구】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해망동	1007-54	대	93	93	강기만	군산시 해망동 1007-54				
2	해망동	1007-44	대	77	77	김영완	군산시 해망동 1007-44				
3	해망동	1007-55	대	58	58	박형선	군산시 해망동 산5-43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소	성명	
1	군산	해망동	1007-54	주택	조적	93	군산시 해망동 1007-54	강기만	
2	군산	해망동	1007-44	주택	조적	69.7	군산시 해망동 1007-44	김영완	
				계단	Con`c	5			
3	군산	해망동	산5-43	경로당	조적	70.5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군산시 공고 제2017-925호

「비용항 정온도 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비용항 정온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비용항 정온도 개선사업

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일원

다. 사업규모 : 외곽시설 350m

- 서방과제 270m, 동방과제 80m, 기존 서방과제 제거 50m

라. 사업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약 36개월(총 3년간)

마. 사업시행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5월 18일 ~ 6월 10일(20일간, 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군산시(환경정책과), 소룡동주민센터,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요약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11:00

나. 장소 : 새만금관광안내소 2층 회의실

4. 주민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공람기관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402) 및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일원	
사업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약식평가서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p>-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p> <p>-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약식평가서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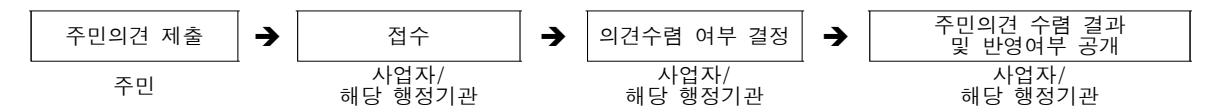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군산시 공고 제2017-965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6-155호(2016.12.9.)」 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도로:소로1-251,2-575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132-47번지 외 17필지
 나. 사업 명 칭 :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다. 개 요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고
		폭원(m)	연장(m)	최초결정일	폭원(m)	연장(m)	면적(㎡)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소로 1-251	10	190	군산고210 ('96.6.1.)	10	110.2	1,189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소로 2-575	8	108	군산고210 ('96.6.1.)	8	107.6	921	

라. 사업 시행자 : 군산시장

2. 보상 대상

<소로1-251>

연번	토 지 지 번		지 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소재지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지곡동	132-47	답	17	1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천기○	대전 서구 대덕대로127번길 44-9			
						안승○	대전 동구 대전로 646, 106동			

2	지곡동	132-48	답	49	4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지곡동	132-49	답	52	52	김민○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2번길 76	대전원예 농업협동 조합	대전 중구 산 성동 158-8	근저당권 및 지상권
4	지곡동	132-35	답	83	8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	지곡동	132-50	답	52	5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	지곡동	132-51	답	53	5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	지곡동	132-52	답	53	53	이정○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8	지곡동	134-4	답	522	52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지곡동	151-6	답	93	9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0	지곡동	151-18	답	186	186	황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390, 108동 304호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99-2	근저당권 및 지상권
						전영○	전북 전주시 수송동로 36			
						김민○	전북 순창군 복흥면 동서길			
						김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			
						김병○	전북 군산시 미룡로42, 314동			
						김영○	전북 군산시 나운로 19			
						김중○	전북 군산시 구영 4길			
						고금○	전북 군산시 나운로 39			
						정광○	전북 군산시 미룡로41			
						김정○	전북 군산시 계산로 78			
고유○	전북 군산시 계산로 78									
강신○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17									

<소로2-575>

연번	토 지 지 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소재지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지곡동	138-9	답	4	4	김기○	전북 군산시 동지곡길 53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권설정
2	지곡동	143-7	답	484	484	강경○	전북 군산시 백토로242			
3	지곡동	135-6	답	29	29	하인○	대전 서구 둔산동 1203	전주대건 신용협동 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87-1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4	지곡동	135-5	답	22	22	김경○	대전 중구 대종로346	남대전신용 협동조합	대전 중구 보문로 57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5	지곡동	132-46	답	114	114	김필○	대전 동구 대성2길			
						연규○	대전 동구 대성동			
						오선○	대전 유성구 장대동			
6	지곡동	134-3	답	194	19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	지곡동	135	답	80	8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	지곡동	135-7	답	35	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보상시기 : 개별 협의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공탁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5. 30. ~ 2017. 6. 15. (17일)

나. 열람장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22) 및 군산시청 게시판

6. 토지·물건조서 : 불임참조

7.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7-1006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해망3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명칭 : 해망3 급경사지 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성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편입토지조서 참조)

- 면적 : 58㎡
- 규모 : 토지 1필지

라. 사업기간 : 2017. 06. 01. ~ 2018. 12. 31.

마.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2. 보상대상

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해망3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권리 일체(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 06. 01 ~ 2017. 06. 15(15일간)

나. 열람장소 : 군산시 안전총괄과 방재계(☎063-454-3864)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후 2017. 6월 15일 이후부터 보상협의예정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함.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바.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해망3지구】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해망동	1007-55	대	58	58	박형선	군산시 해망동 산5-43				